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군 용 비 행 장 · 군 사 격 장 소 음 방 지
및 피 해 보 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 지자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5명 이내의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에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소음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 시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, 보상금 산정 및 결정 등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는 대상 추가(안 제21조2항)

지역심의위원회 위원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소음 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.

나. 기타 제도 운영 간 미비점 해소(안 제11조6항,7항, 제14조1항,3항)

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접수 서류를 보완하고,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항 및 제7항 중 “간 경계”를 각각 “경계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중 현행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(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만 해당한다.)

제14조제3항 본문 중 “출입국에 대한”을 “병적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, 출입국에 관한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제2호 중 “사람 중”을 “사람 또는 해당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 주민이 추천하는 소음 분야 전문가 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개정일 이후 즉시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) ① ~ ⑤ (생략)	제11조(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<u>간 경계</u> 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계</u> ----- ----- -----.
⑦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<u>간 경계</u> 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지역심의위원회”라 한다)가 심의하여 결정한다.	⑦ ----- ----- ----- <u>경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4조(보상금의 지급 신청) ① (생략)	제14조(보상금의 지급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<u>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(혼인으로 배</u>

5. (생략) 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, <u>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의 내용</u>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. ④ ~ ⑤ (생략)	<u>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만 해당한다.)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병적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, 출입국에 관한</u> ----- --. ----- ----- -----. ④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 ②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	제21조(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

으로 한다. 1. (생략) 2.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<u>사람</u> 중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③ ~ ⑦ (생략)	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사람 또는 해당 특별자치시·</u> <u>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</u> <u>주민이 추천하는 소음 분야</u> <u>전문가 중</u>-----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군소음보상팀	
연 락 처	(02) 748 - 5866